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운영 >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62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운영	2

I. 개요

1.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11.
- (3) 회 부 일 : 2025.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해당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4조의6(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u>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급식시설의 설치·운영·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급식지원 사업 및 급식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의 근거는 별도로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개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38.2%이고¹⁾,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35.7%로서²⁾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급식지원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영역에서의 급식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급식시설은 ①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 ②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균등화 소득이 전체 인구의 빈곤선 아래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2024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제2조제1호3)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른 급식 시설은 이러한 근거 없이도 설치·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중 하나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에서 급식지원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처럼 각종 복지사업의 근거는 개별 법률에 두되,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현행법의 기본적인 체계로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에 관한 근거 역시 대상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운영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둘째, 개정안에 따른 급식시설은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위생 및 영양 측면에서 「식품위생법」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및 일정한 보고의무 등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집단급식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고,⁴⁾

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 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⁵⁾

개정안에 따른 급식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식품위생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규칙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그 설치·운영을 인정하는 것은 급식안전 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입법례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대상별 급식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로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영역을 포괄하는 일반 법으로 개별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 유형의 설치·운영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인 「노인복지법」, 「노숙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상자별 시설 내 급식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급식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으며 별도의 지원 근거만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05년 취약계층 급식 지원 관련 사업 지방 이양된 점 감안 시, 신중 검토가 필요함.

- (대한영양사협회)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경우 취약계층으로서 치아 손실, 저작곤란,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의 감소 등으로 신체가 쇠약하고 노화로 인한 영양불균형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하위규정에 인력기준을 포함하여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영양사 배치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497